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. 5. 31 선고 2016가단100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
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0. 5. 14 선고 2018다298393 판결

춘천지방법원 2018. 11. 14 선고 2017나51911 판결

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. 5. 31 선고 2016가단1002 판결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

피고대한민국

변론 종결 2017. 5. 17.

판결 선고 2017. 5. 3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B 임야 4,383m²(이하 'B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 주장의 요지

C이 1940. 3. 5. 강원 평창군 D 전 1,320평 토지(이하 'D 토지'라 한다)를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고, 이를 원고가 상속받았다. 이와 같이 D 토지가 매매되었고,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나,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고, 지적도상 D 토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. 그런데 피고가 1988. 12. 22. 무주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B 토지가 D 토지와 동일한 토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문서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, ① C이 D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매도증서가 존재하고, 등기부등본상 1940. 3. 5.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, ② D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나,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고,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, ③ 구 임야도상 서로 인근에 위치하나 연접하지 않은 두 개의 토지에 'B'이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, ④ 위 'B'이 기재된 토지 중 하나의 토지는 현재의 지적도상 B 토지와 일치하고 다른 토지는 E 토지 부분인 사실, ⑤ D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면적은 1,320평(약 4,363m²)으로 B 토지의 면적 4,383m²과 유사한 사실은 인정되나, 이러한 사실들과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D 토지와 B 토지가 동일한 토지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강성우